

제 2012-Ca-0004 호



안 전 인 증 서

3M Company

3M Corporate Headquarters: 3M Center, St. Paul. Minnesota 55144-1000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용접용보안면

형식·모델/용량·등급/인증번호

형식·모델

용량·등급

인증번호

SPEEDGLAS 9100V

자동용접필터형
(#5,#8,#9~#13)

12-AV4Ca-0004

인 증 기 준

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(노동부고시 제2009-38호)

인 증 조 건

아래 주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함.

3M Company, 3M Gagnef, Ernst Hedlunds vag 35, SE-78041, Gagnef, Sweden

2012년 03월 05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